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수립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용역 과업지시서

2023. 3

국 토 교 통 부 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단

- 1 -

6. 준거 기준

본 과업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조 및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1호, '21.1.12.)에 따르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II. 과업의 세부내용

1. 과업기간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7개월(21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 (2)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 (3)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발주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 (4)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과업의 주요내용

기본업무	단위업무	세부수행업무
1. 작업계획 수립	가. 작업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야별 작업계획 수립 및 협조체계 구축 •자료수집 및 조사일정 수립 •인력투입 및 예정공정표 작성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검토
2. 계획의 개요	가. 계획 배경 및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의 배경 •계획의 필요성과 목적
	나. 계획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검토대상 유형 제시 •계획의 명칭, 위치, 면적(길이), 시행자, 계획기간, 소요예산 •계획대상지 위치도(항공사진, 현장사진) •도지이용계획도 및 표 •기대효과
	다. 재해영향성 검토 실시근거 및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계획의 종류 및 범위 •관련법, 행정계획의 범위, 협의시기

- 2 -

I. 과업개요

1. 과업명 :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수립 사전재해영향성검토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수립」은 「공항시설법」 제4조에 따른 공항 또는 비행장의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이므로, 「자연 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라 지역에 미치는 재해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재해유형별 피해와 피해를 유발하는 증가요인을 분석하여 그 요인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 (1) 본 과업지시서에서 “발주기관”이라 함은 본 용역의 발주기관인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용역기관”이라 함은 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대표를 말한다.
- (2)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용역기관”간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4. 과업 기간

본 과업의 수행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7개월(210일)로 하되, 발주기관과 용역기관의 합의 하에 과업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과업의 범위

본 과업의 범위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대상 사업으로 인해 지역에 미치는 재해영향을 사전 평가 후 재해유형별 피해와 피해를 유발하는 증가요인을 분석, 그 요인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수립한 재해영향성검토서를 작성하여 관련기관에 제공하는 등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관련업무 일체

- 위 치 : 부산광역시 가덕도 일원
- 면 적 : A=7,539,000m² (공항 7,140,000m² 도로 227,000m² 철도 172,000m²)

- 1 -

기본업무	단위업무	세부수행업무
3. 재해영향성검토 대상지역	가. 검토 대상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검토 대상지역 유형 구분 •개발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광역계획 •면적 개념의 단지개발 •선 개념의 도로 및 철도 건설
4. 기초현황 조사	가. 재해발생 현황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 문헌조사 및 현지 탐문조사
	나. 관련계획 및 지구지정 현황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지역 및 주변지역 조사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도 작성
	다. 방재시설 현황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재시설 조사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상황
	라. 현장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요시) 지역주민을 통한 탐문 •(필요시) 전문가 현장조사
5. 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분석 및 저감방안 제안	가. 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분석 및 저감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천재해 및 내수재해 •사면재해 및 토사재해 •해안재해 및 바람재해 •기타재해
	나. 행정계획및 개발사업 반영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해유형별 저감방향을 계획에 반영토록 •개발사업과 연계되는 경우 저감방향을 제안 •개선 등 관계기관과 협의 필요시 추가 제안

3. 평가기준

- (1)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에 의하여 재해영향성검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내에 대상사업에 대한 평가협의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2) 재해영향성검토서에는 자연재해 등에 대한 영향 검토 후 그 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평가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 (3) 본 과업에 사용되는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하고 출처를 명시한다.

- 3 -

- (4)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이 완료되기 전에 평가를 완료하여 평가 결과가 당해 설계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설계용역 완료 전까지 평가완료가 어려울 시는 그 사유와 향후 대책 등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재해영향성검토서 등의 작성 방법

- (1) 재해영향성검토서 등은 과학적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논리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선정된 대상지역, 평가방법, 평가조건, 평가에 사용된 계수, 수치 등에 대한 선정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 (2) 재해영향의 예측·분석에 사용된 기법, 내용, 관련 자료 등을 명시하고 사용근거 등을 제시한다.
- (3) 재해영향성검토서 등의 내용 중 법규 또는 그에 따른 행정계획 등 일정한 근거 또는 확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근거를 기술하거나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문서 등의 사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 (4) 재해영향성검토서 등에 사용되는 전문용어에 대하여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을 붙여야 한다.
- (5) 구체적인 재해영향성검토서 작성 방법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을 참고한다.

5. 책임기술인의 자격 등

- (1) 재해영향성검토 책임기술인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인증서를 발급받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단,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발급 받은 날부터 3년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7)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분야별 참여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참여자 교체 시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8)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 시에는 과업 중 또는 완료 이후라도 필요한 자료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 (9) 본 과업 수행 중 관련 법규 및 지침 등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사항에 따라 과업을 추진한다.
- (10) 과업 착수 후 7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11) 기초조사, 기초현황 조사 및 기타 관련사항은 사진촬영을 하여야 하며, 인화된 사진은 사진첩으로 제출하고 CD를 첨부하여야 한다.

- (2) 책임기술인은 재해영향성검토서 작성시 필요한 경우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3] 제2호에 따른 기술 인력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감독 하에 재해영향성검토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기술인의 감독 하에 재해영향성검토를 하려는 자는 가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6. 설계변경조건

- (1) 평가과업 수행 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2/)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7. 기타사항

- (1) 본 용역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시행하되, 발주기관으로부터 내용의 일부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을시 본 과업지시서 내용의 일부로 간주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2) 과업수행 중 “용역기관”의 과실로 인적 및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 발생시 “용역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진다.
- (3) 타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과업 수행과정(과업 종료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기관의 각종 심의, 회의에 참석하여 동 과업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 (4) 본 용역비 중 “경비”에 대하여는 준공일 이전까지 집행에 관한 증빙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 정산할 수 있다.
- (5) 본 용역비 중 “인건비”에 대하여는 투입인력 현황을 제출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이 상근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6) 용역계약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

III. 성과품 작성 및 납품

- 1.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최종보고서는 과업 완료 전 30일 이전에 최종보고서(안)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검토를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 3. 보고서 및 성과품

본 용역 과업 수행 중 및 과업 수행 후 계약자는 성과품을 다음과 같이 납품하여야 하며, 추가 보완 인쇄물 등 성과품의 부수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토록 한다. 다만, 성과품의 부수는 필요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1) 재해영향성검토 보고서 17부(사전검토 2부, 협의용 10부, 최종5부), 조치계획서 10부, CD 3set, USB 1set
- (2) 보고서, 사전검토보완서, 심의의결보완서 CD 1set, USB 1set
- (4) 기타 아래의 관련서류(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안에 한함) 1식
 - 관계기관 협의서류
 - 현안사항 관련서류
 - 재해영향성검토 관련서류
 - 용역사와 관계기관 등과의 문서
 - 기타 용역수행 시 발생된 문서일체

IV. 보안대책

본 과업의 평가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 대표자는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54조 ①의 보안성 검토 사항을 과업착수와 동시에 준수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해서는 과업수행기관 대표자 책임하에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착수계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보안 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해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관리하여야 한다.
3.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54조 ⑥”에 따라 용역감독관은 과업종사자에게 정기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며, 보안대책 이행여부를 월 1회 이상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서면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 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으며, 납품 물량 외 추가 발행을 금지한다. 또한 불량 및 파지 등의 소각도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관리하여야 한다.
6.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업수행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하고 원지·폐지 등을 완전 회수·소각하여야 한다.

7.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하며, 성과품 작업 시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 하되, 정규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8. 과업종사자가 교체되거나 과업 종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9. 과업수행 중 발생한 자료 등의 폐기물은 정·부 보안관리 책임자 책임하에 완전 소각하여야 한다.
10. 용역계약자는 용역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11. 기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에서 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V. 예정공정표.

예 정 공 정 표

◎ 전 체 : 210일(7개월)

세 부 공 중	착 수 일 도 부 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1. 작업계획 수립	■						
2. 계획의 개요	■	■					
3. 재해영향성검토 대상지역		■	■				
4. 기초현황			■	■			
5. 재해유형별 위험요인분석 및 저감방안 제안			■	■			
6. 평가서 작성				■	■		
7. 평가서 협의 및 보완						■	■